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37

제출년월일 : 2014. 9. 29.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의 정의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 준용과 전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13 - 156·160)

□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정의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중 제1호~제5호 규정은 준용하고 제6호~제7호는 별도 조문으로 분리(안 제2조).

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 및 지원근거 조항 신설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급기간 단축

난방비를 가구당 월 3만원씩 5회(1~3월, 11월~12월) 지급하던 것을 흑한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5만원씩 3회(1,2,12월) 지급으로 조정(총금액 변동없음)(안 제5조)

■ 타시 지원 사례

구 분	동절기 구분	총 지급액	지급 횟수 및 시기	비고
안양시	별도 조례 없음	200,000원	2회(1,2월)	
오산시	조례상 동절기 명문화 안됨	100,000원	1회(11월)	
안산시	5개월(11~12월, 익년 1~3월)	150,000원	5회(1~3월, 11~12월)	

※ 지급액은 안양보다 적으나 지급 횟수가 가장 많아 동 주민센터 지원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내용 삭제

제5조(조사실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삭제.

○ 지원 중지의 사유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항 신설

난방비 지급대상자의 지원 중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안 제5조).

난방비 부정 수급자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붙임

입법예고 결과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난방비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난방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여성가족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담당자 성명·전화	이순애 (행정 2606)

[별 표]

난방비 지급기준

회수	지급기준일	지급일	지원금액	비고
1회	1월 15일	1월 25일	5만원	
2회	2월 15일	2월 25일	5만원	
3회	12월 15일	12월 25일	5만원	

※ 비고

1.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한 후 최초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모 또는 부와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안
<p>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p> <p>6. "한부모가족 수당"이란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대단위의 부가급여를 말한다.</p> <p>7. "동절기" 라 함은 11월~3월(5개 월간)로 정한다.</p> <p>제3조(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신 설></p>	<p>제3조(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4조(지원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및 신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동절기 동안 한부모가족 수당을 지원하되 그 시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지원시기 : 매월 말일 전 2. 지원금액 : 월 3만원</p> <p>② 한부모가족 수당 지급신청은 법 제11조에 의한 신청으로 갈음한다.</p>	<p>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시장은 난방비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난방비 지원을 중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p>
<p>제5조(조사실시) 「제3조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조사로써 갈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6조(지원의 중지 및 부정수급의 징수)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p> <p>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수당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하고, 시장은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p>	<p>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p>제7조(시행규칙) (생 략)</p>	<p>제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